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3. 주요골자

-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안 제3조)

다. 협의체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함 (안 제4조)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함 (안 제6조)

마.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각 협의체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2조)

바.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 (안 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건은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므로써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건의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완벽한 수립과 시행·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고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소외되고 불우한 영세 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므로써 사회안전망이 구축 된다고 판단되며
- 특히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중 제11조 「의결 사항의 처리」 내용상 후단 단서에 「구청장은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필요에 따라 상황이 수시 변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한다」 라는 강행규정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